

연금저축

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 (B 1 . 2)

사 업 방 법 서

연금저축 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B1.2)

1.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 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B1.2)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납입주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연금지급개시나이(A)		만55세 ~ 80세			
보험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A)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A)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료납입기간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X)		만18~(A-10)세	만18~(A-15)세	만18~(A-20)세	만18~(A-10)세
보험료납입주기		기본보험료: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주) 1.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계약자가 약관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A)세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지급기간(5, 10, 또는 20년)까지로 함
2. 다만, 월납 기본보험료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최대 가입나이는 제한될 수 있음

3. 납입보험료의 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지급개시나이-2년」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이 기본보험료 총액 이하인 경우의 보험료 부분은 기본보험료로 하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의 보험료 부분은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1) 월납 기본보험료는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5万이상 5.5万미만	만18~(A-11)세	만18~(A-15)세	만18~(A-20)세	만18~(A-11)세
5.5万이상 100만원이하	만18~(A-10)세			만18~(A-10)세

- (2)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기본보험료의 300%이내로 한다.
- (3) (1) 및 (2)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이내로 하며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한다.

4.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내

계약자는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지급개시나이-2년」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단,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5.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내

해당월의 예정사업비(수금비 제외)를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적립액에서 공제한다. 단,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기본보험료에 대한 해당월의 유지비(보험료납입기간 중에는 납입중 유지비, 보험료납입기간 이후에는 납입후 유지비)를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청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자 동의를 얻는다.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의 수금비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예정사업비는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한다.

6.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한다.

7.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이라 한다)이내에 한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이차배당기준율로 월단리, 연복리의 방법으로 부리하여 적립한다.

다. “가” 및 “나”에 의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의 소멸시 보험금 등에 더하여 지급하거나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까지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연금 등으로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 1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도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가산연금 등으로 지급한다.

다.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 1년전 계약해당일까지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10회(단,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5회)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 이후 매년 발생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매년 연금지급시 가산연금으로 지급한다.

라. “가” 내지 “다”에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가되는 특약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포함한다.

9.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보장형 연금지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평가한다.

다.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납입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일 직후의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일 직후의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1) 및 (2)에 있어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0. 기 타

가.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65:3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cdot \text{공시기준이율}(\%)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0.65 + \text{외부지표금리} \times 0.35$$

-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cdot \text{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left[\sum_{t=1}^{12} \{ \text{직전}(t+1)\tex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 12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right]}$$

$$\cdot \text{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left[\sum_{t=1}^{12} \{ \text{직전}(t+1)\tex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 12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right]}$$

- ②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cdot \text{외부지표금리수익률}(\%) = (A1 \times 0.7 + A2 \times 0.2 + A3 \times 0.1)$$

$$\left[\begin{array}{l} A1 : \text{국고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 \text{회사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3 : \text{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end{array} \right]$$

$$\ast \text{가중이동평균이율} = \frac{Mi(-3) + Mi(-2) \times 2 + Mi(-1) \times 3}{6}$$

Mi(-3)은 직전3개월, Mi(-2)은 직전2개월, Mi(-1)은 직전1개월 이율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다만, 1년 통화안정증권이 공시되기 이전은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4.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 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 국고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2) (1)의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부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단, 최초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 (3)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적용한다.
- (5)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나. 보험료 소득공제 등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료×12×Min{보험료 납입기간,10}」으로 한다.

바. 선납보험료

-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1)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고,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다.
- (3)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 이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사.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회사가 직접 계좌이체하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3)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한다.
 - ①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 ②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 ③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 ④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 ⑤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 중인 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특약 포함)
- (4) 계약자가 이미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다.

아.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2) 모집수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자.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휴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이름을 추가 기재할 수 있다.
[예 : 연금저축국민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B1.2)]

(별첨 제1호)

보 험 증 권 (보 험 가 입 증 서) 의 서 식

(별첨 제2호)

보 험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

(별첨 제3호)

부 활 (효 력 회 복)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